광운대학교 중앙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신•구조문 대비표



광운대학교 총학생회

光云大學校 總學生會



개 정 안 신 ● 구 조 문 대 비 표

중앙선거시행세칙

총					칙	 3
중	앙 선	거 괸	! 리	위 원	회	 3
후		보	-		자	 4
선	거	운	동	본	부	 6
투					丑	 7
온	라	၀ု	<u> </u>	투	丑	 9
개					丑	 11

제1장 총칙

신설

제3조(적용범위)

- ① 본 세칙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.
- ②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타 자치기구의 선거는 자체 회칙 및 세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된 회칙 및 세칙이 없거나 부실한 자치기구의 경우,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하여 이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신설근거

- 1. 기존에 명시되어 있지 않던 적용범위에 관한 조를 신설한다.
- 2. 회칙 및 세칙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실한 단위의 원활한 선거를 위한 항을 신설한다.

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현행

제8조(구성)

- ①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학대회 의장은 투표 시작일 30일 이 전에 중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.
-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권은 중운위가 갖는다.
-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 중호선된 1명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명과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한다.
- ④ 중앙선거관리부위원장은 중선관위 내에 서 합의를 통해 선출된 1명으로 한다.
- ⑤ 중앙선거관리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

개정

제9조(구성)

- ①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학대회 의장은 투표 시작일 30일 이전 에 중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.
-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권은 중운위가 갖는다.
-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호선된 1명으로 한다.
-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 장이 추천하는 1명과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하고 전체학생대표 자회의에서 인준한다.
- ④ 중앙선거관리부위원장은 중선관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선출된 1명으로 한다.

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또는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⑥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제반 업무 처리를 위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으로 둘 수 있다. (단, 집행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.)

제11조(업무 및 권한) 중선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- 1. 선거 전반의 질서 유지 및 감독
- 2. 선거인 명부 작성
- 3. 선거 일정 및 주요 사항 공고
- 4. 입후보자 자격 결정 및 심사
- 5. 투표 결과 및 당선인 확정 공고
- 6. 선거 및 당선의 무효 여부와 재선거 여 부 결정
- 7. 중앙선거관리위원 징계 심사 및 의결 (단, 자격 박탈 및 해임의 징계 시 중운위 의 의결을 거친다.)
- 8. 중앙선거시행세칙 위반 여부 판단 및 징 계 의결
- 9. 기타 선거와 관련된 제반 업무

을 공개한다.

- ⑤ 중앙선거관리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 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또는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⑥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제반 업무 처리를 위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으로 둘 수 있 다. (단. 집행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 는다.)

제12조(업무 및 권한) 중선관위는 다음 각 호 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- 1. 선거 전반의 질서 유지 및 감독
- 2. 선거인 명부 작성
- 3. 선거 일정 및 주요 사항 공고(온라인 선 거의 경우, 그 방법 및 본회 회원의 개인 정보 동의와 같은 절차상의 주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)
- 4. 입후보자 자격 결정 및 심사
- 5. 투표 결과 및 당선인 확정 공고
- 6. 선거 및 당선의 무효 여부와 재선거 여부 결정
- 7. 중앙선거관리위원 징계 심사 및 의결 (단, 자격 박탈 및 해임의 징계 시 중운위의 의결을 거친다.)
- 8. 중앙선거시행세칙 위반 여부 판단 및 징 계 의결
- 9. 기타 선거와 관련된 제반 업무

제19조(선관위 결산) 중선관위는 당선자 확 제20조(선관위 결산) 중선관위는 투표 종료일 정으로부터 3일 안에 공탁금에 관한 결산안 │로부터 3일 안에 공탁금에 관한 결산안을 공 개하며 결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, 전학 대회는 결산안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.

1.	기존 3항의	내용을 분리하고	, 모호했던	중앙선거관리위원의	지위를	분명하
	게 하기 위	하여 4항의 내용을	늘 추가한디	- .		

개정 근거

- 2. 온라인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공고해야 한다는 업무를 추가한다.
- 3. 당선자 확정보다 명확한 표현인 '투표 종료일'로 수정하고 결산안을 공개하지 않을 시에 대한 문구를 추가한다.

제4장 후보자

현행

제20조(예비후보자 등록)

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 일정 공 고일로부터 5일 내에 중선관위에 서면으 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하여야 한다.

제21조(후보자 등록)

- ①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로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는 당해 연도 중선관위가 정한 기한까지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 - 1. 총학생회장단 입후보 등록원
 - 2.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 재학 증명서 각 1부
 - 3. 입후보자 추천서
 - 4. 명함판 실물 사진
 - 5. 5개 이내의 핵심 선거 공약
 - 6. 선거운동본부원 명단
 - 7. 공탁금 80만원
 - 8. 공정선거 서약서 각 1부

개정

제21조(예비후보자 등록)

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당해 연도 중 선관위가 정한 기한까지 중선관위에 서면 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하여야 한 다.

제22조(후보자 등록)

- ①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로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는 당해 연도 중선관위가 정한 기한까지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등 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 - 1. 총학생회장단 입후보 등록원
 - 2.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 재학 증명서 각 1부
 - 3. 입후보자 추천서
 - 4. 명함판 실물 사진
 - 5. 5개 이내의 핵심 선거 공약
 - 6. 온라인 투표 사이트에 기입할 정보(이
 - 름, 생년월일, 학과, 학년 등)
 - 7. 선거운동본부원 명단
 - 8. 공탁금 80만원
 - 9. 공정선거 서약서 각 1부
 - 10. 선거운동본부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소(단,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

는 주소가 없는 경우엔 제출하지 않아 도 된다.)

1. 세칙 내에서 양립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제21조제1항을 수정한다.

개정 근거

- 2. 온라인 선거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등록해야 할 때 제출해야 할 내용과 관련한 호를 추가한다.
- 3. 선거운동본부가 사용할 사무실 주소를 후보자 등록 서류에 추가한다.

제5장 선거운동본부

신설

제31조(선거운동본부 사무실)

- ① 선거운동본부 사무실은 원활한 선거운동을 위한 제반사항 및 준비물을 둘 수 있는 공간이다.
- ②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을 둘 수 있다.
- ③ 각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은 중선관위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- 1. 자치기구의 사무실
- 2. 총학생회실 및 이에 준하는 공간
- 3. 그 밖에 중선관위의 판단에 따른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가
- ④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학내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선거운동본부에게는 중선 관위는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.

개정 근거

선거운동본부는 선거기간 내 원활한 선거운동을 위한 제반사항 및 준비물을 둘 수 있는 공간으로서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세칙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한다.

제8장 투표

현행

제51조(투표기간)

- ① 투표일은 당해 연도 중운위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.
- ② 투표는 3일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선관위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. (단, 최대 연장 일수는 1일로 제 한한다.)
- ③ 투표시간은 09:00부터 19:00까지로 한다. (단, 부득이하게 투표시간의 조절이필요할 경우 투표 개시 24시간 전까지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각 일자별 투표시간을 미리 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)
- ④ 투표 마감시간 이후라도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마감하여야 한다. (단, 투표시간을 넘겨서 투표소에 도착한 선거권자는 투표를 진행하지 못한다.)
- ⑤ 중선관위의 과실로 보장되지 못한 투표 시간은 그 시간만큼 당일에 연장하여야 하며, 중선관위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온•오프라인 게시판에 고지하여야 한다.

제52조(투표소)

- ① 투표소의 설치 장소는 중선관위에서 의 결을 통해 결정한다.
- ② 투표소는 각 건물마다 중선관위에서 결 정한 층에 초록색 테이프 안으로 정한 다.
- ③ 투표소의 기표 장소는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한다.

제53조(투표방법)

- ① 투표는 무기명 기표 방식으로 한다.
- ② 투표는 오프라인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, 중선관위 의결에 따라 온라인 투표를 병 행할 수 있다. (단, 야간대학 및 평생교

개정

제53조(투표기간)

- ① 투표일은 당해 연도 중운위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.
- ② 투표는 3일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중선관위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 다. (단, 최대 연장 일수는 1일로 제한한 다.)
- ③ 투표시간은 09:00부터 19:00까지로 하며, 온라인 투표 시간의 경우 투표 개시일 09:00부터 투표 종료일 19:00까지로 한다. (단, 부득이하게 투표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투표 개시 24시간 전까지 중 선관위 회의를 통해 각 일자별 투표시간 을 미리 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)
- ④ 투표 마감시간 이후라도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마감하여야 한다. (단, 투표시간을 넘겨서 투표소에 도착한 선거권자는 투표를 진행하지못한다.)
- ⑤ 중선관위의 과실로 보장되지 못한 투표시 간은 그 시간만큼 당일에 연장하여야 하 며, 중선관위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온• 오프라인 게시판에 고지하여야 한다.

제54조(투표소)

- ① 투표소의 설치 장소는 중선관위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.
- ② 투표소는 각 건물마다 중선관위에서 결정 한 층에 초록색 테이프 안으로 정한다.
- ③ 투표소의 기표 장소는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한다.
- ④ 온라인 투표로 시행하는 선거에서는 별도 의 투표소를 두지 않는다. (단, 당해 연도 중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별도의 투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중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 투표소를 둘 수 있다.)

육단과대학은 온라인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.)

- ③ 온라인 투표는 투표 개시 3일 전까지 선거의 기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플랫폼으로 투표 수단을 결정하여 이를 온•오프라인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.
- ④ 장애인 및 기타 투표 방법에 제한이 있는 자의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중선관위 및 참관 인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.

제55조(투표방법)

- ① 투표방법엔 무기명 기표 방식과 온라인 투표 방식이 있다.
- ② 투표는 무기명 기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, 당해 연도 중선관위 의결에 따라 투표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다. (단, 야간대학 및 평생교육단과대학은 온라인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.)
- ③ 투표방법에 변경이 있을 경우, 중선관위는 선거 일정 공고와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.
- ④ 장애인 및 기타 투표 방법에 제한이 있는 자의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중선관위 및 참관인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.

1.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경우의 투표시간을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한다.

개정 근거

- 2. 온라인 투표의 경우 별도의 투표소를 두지 않으며, 중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 투표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다.
- 3. 온라인 선거 도입을 위해 투표방법에 온라인 투표 방식을 명시하며, 투표 방법의 결정은 중선관위 의결에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한다.

제9장 온라인투표

신설

제65조(정의) 온라인투표란, 모바일이나 웹 환경에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투표를 말한다.

제66조(적용범위) 본 장은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는 선거에 타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,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온라인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회칙 및 본 세칙 및 중선관위의 의결 에 따른다.

제67조(온라인투표) 온라인투표는 선거 기간 내,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투표를 진행한다.

제68조(온라인 투표 시행 여부 결정)

- ① 중선관위 소집 이후, 중선관위는 선거 일정 공고일 이전까지 온라인 투표의 시행 여부를 의결한다.
- ② 중선관위는 온라인 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선거 일정 공고와 동시에 온/오프라인 게 시판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③ 중선관위는 선거 진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, 중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온라인 투표의 시행 여부를 번복할 수 있다.
- ④ 온라인 투표 시행 여부를 번복할 경우, 번복 사유를 온/오프라인 게시판에 지체없이 고지

하여야 하며, 선거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1회 이의제기 할 수 있다.

제69조(온라인 선거시스템에서의 유효한 투표)

- ① 모든 유권자는 총학생회 선거, 단과대학 학생회, 학부·학과 학생회 선거에 대하여 광운 대학교 KLAS 계정 당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본인의 계정으로 직접 온라인 선거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유효하다.
-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무효표로 한다.
- 1. 중복투표로서 투표지 항목 중 둘 이상의 표기를 하여 제출한 경우

- 2. 기권표로서 기권 항목에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
- ③ 중복투표 및 기권표 제출의 가능 여부는 온라인 선거시스템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선관 위의 의결을 따른다.
- ④ 투표지를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종료한 경우 투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- ⑤ 프로그램의 오류 등 기타 사정으로 투표지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이 완료되었음에도 투표의 내용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의 상실 여부는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한다.

제70조(온라인 투표 상의 부정행위)

- ① 고의로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서버를 과부하 시킬 의도로 반복 접속하는 경우,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선거를 방해하는 등 온라인 선거시스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- ②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,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공정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학교 당국에 고발할수 있다.
- 1. 선거자의 신분확인정보를 탈취하여 투표하는 행위
- 2. 선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자의 투표 과정이나 투표 결과를 확인하거나 폭행,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투표하게 하는 행위
- 3. 선거자 본인이 아닌 자가 대리로 투표하는 행위
- 4. 이외의 선거부정행위
- ③ 본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중선관위의 판단에 따른다.
- ④ 중선관위는 온라인 투표 상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,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며, 징계는 제7장의 내용에 따른다.
- ⑤ 부정 투표 사실이 확인된 경우, 해당 유권자에 의한 투표는 득표율에 포함되지 않는다. 제71조(온라인 투표의 이의제기) 온라인 투표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거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의 절차는 본 세칙 제50조에 내용에 따른다.

제72조(기타) 본 제9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이외에 선거와 관련한 기타 모든 온라인 투표의 세부사항은 본 세칙의 규정에 따른다.

장 신설 근거

온라인 투표의 정의, 적용범위, 방법, 시행 여부 결정, 유효한 투표, 부정행위, 이의제기 등 온라인 투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온라인 투표가세칙으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장을 신설한다.

	제107	장 개표		
	현행	개정		
선관위에/ ② 개표는 오 후 온라인 ③ 중선관위	는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중 서 담당한다. .프라인 투표함을 먼저 개봉한 ! 투표의 결과를 더한다. 는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 ·위 집행위원을 개표관리위원으 있다.	제73조(개표) ① 개표 사무는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중선관위에서 담당한다. ② 개표는 오프라인 투표함을 먼저 개봉한후 온라인 투표의 결과를 더한다.(단, 온라인투표만 진행할 경우엔 온라인 투표의결과만을 집계한다.) ③ 중선관위는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중선관위 집행위원을 개표관리위원으로둘수 있다.		
신설 근거	1. 온라인 투표 도입에 맞게 제	73조제2항에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.		
	٠]설		
 오라인 선이 갖추어 개표 장소 정한다. 	진 경우 위원장의 개표 시작 신	표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하여 중선관위가		

현행

제69조(무효표)

-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무효표로 간주한다.
 - 1. 기권
 - 2. 중선관위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투표용지
 - 3. 참관인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투표 용지
 - 4. 기표란 외의 부분에 기표한 투표용지
 - 5. 지정된 도구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
 - 6. 직인 또는 순번이 확인 불가한 투표용
 - 7. 이하 개표를 종료할 때까지 중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는 투표용지
- ② 무효표는 투표율에 포함한다.

개정

제80조(무효표)

-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무효표로 간주한다.
 - 1. 기권
 - 2. 중선관위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투표용지
 - 3. 참관인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투표 용지
 - 4. 기표란 외의 부분에 기표한 투표용지
 - 5. 지정된 도구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
 - 6. 직인 또는 순번이 확인 불가한 투표용지
 - 7. 제70조제2항에 따른 무효표
 - 8. 이하 개표를 종료할 때까지 중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는 투표용지
- ② 무효표는 투표율에 포함한다.

신설 근거

1. 온라인 선거에서의 무효표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항을 신설한다.